

2022년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전시회 경기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경기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경기도 도내 기업 9개사
- **참가비** : 370만원 내외(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각각 50%)
 - ※ 참가업체 부담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각각 50%, 왕복 항공료, 체재비, (숙박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비용 등
- **주요 지원내용**(지원 예산 변동 가능)
 - ①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50%(9㎡, 1개 부스 기준)
 - ② 부스 방문 바이어와 상담 지원(통역, 1사 1명 限)
 - ③ 해상 편도 운송료 100%(1CBM, 공식 물류사 이용 조건)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MANUFACTURING INDONESIA 2022)

나. 사업기간 : 2022년 11월 30일(수) ~ 12월 3일(토) (4일간)

다. 개최장소 :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인도네시아

라. **모집업종** : 산업용 기계류 및 기계부품,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공장자동화 등
산업설비 전반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MANUFACTURING INDONESIA 2022)
- 주최 : PT. Pamerindo Indonesia(www.pamerindo.com)
- 개최장소 :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인도네시아
- 개최주기 : 년 1회 (1990년부터 2022년 32회째)
- 규모 : 37,645㎡, 약 40여개국 2,000여개사 4만여명 참가
- 특성
 - 산업기계 종사자만이 참가하며 동남아 지역의 기계류 동향 및 최신 정보 습득을 통하여 제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에 용이
 - 산업기계 및 장비, 기계공구 및 금속가공기계, 환경기술, 자동화 및 물류, 용접기 등 관련 5개 전문분야 전시회가 합동으로 개최되어 참관객 및 참가 업체를 공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기대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당해년도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 참가, 온라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참여 기업
-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 과거 道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 발생 및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평가 단계에서 20점 감점

나. 참가비 : 임차료 및 장치비의 50% 자사부담금(370만원 내외)

- ※ 참가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환율 및 현지 물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업체 대상 입금계좌 별도 공지 예정
- ※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선정 취소되며 납부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다.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 법인 또는 대리점 명의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참여불가
- 지방세, 국세 체납 중소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참여불가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중소기업 참여불가
- **2020년 7월 2일 ~ 2022년 7월 3일 기간 중 아래 11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2022년 경기도 지원사업 변경사항 (필독)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2-5003호) 이에 따라 소명자료 서류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3. 신청기한 : **2022년 7월 4일(월) ~ 25일(월) 17: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니스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 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필수제출**)
-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 ③ 제품 카탈로그(**필수제출**) : 영문 카탈로그 제출 시 가점
-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⑥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
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
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⑧ 2021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제출**)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수출실적 없어도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①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2층)
경기북부지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제1전시장 1층)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 '증명서 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필수제출)

※ 유효기간이 2022년 7월 4일 이후인 서류로 첨부

⑩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 필수제출)

⑪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별첨2 필수제출)

⑫ 경기도 해외전시관 단체관 참가를 위한 각서(별첨3 필수제출)

5. 지원기업 선정

-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미 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다. 해당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불임의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라.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마.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공고일 이전 2년 (2020년 7월 2일 ~ 2022년 7월 3일) 중 11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 취소, 지원액 전액 환수, 3년간 지원제한 조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6.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법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붙임1)에 의거하여 평가

- 출품 품목의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제출서류 정량평가(50점) 및 시장성평가(50점)을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나. 선정결과 발표 : 2022년 8월 16일(화) (예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발표 후 개별 이메일 통보

7. 향후 일정

가. 선정업체 사전설명회 : 8월 말(추후 개별 안내)

※ 지원내역, 부스 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숙박 안내 등 진행 예정으로 선정 업체는 필참 요망

나.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11월

다. 전시회 운영 : 2022년 11월 30일(수) ~ 12월 3일(토), 4일간

8.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박지은 팀장

(Tel. 031-995-6168, e-mail. jieun.park@kita.or.kr)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¹⁾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²⁾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10 (최대)
참가실적 (5)	직전 2년('21, '20)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 이상(1)	5
수출실적 (13)	전년도(2021년) 수출금액 ※ 전년도(2021)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20)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시장성 (5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 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50
참가제한	당해년도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기업		탈락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71개

2)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71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9)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O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JPAL	JHOSPA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일본태양광인증)	(일본의료기기)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 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 (Ukrainian Scientific Certification Institute)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1)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9)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r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2)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7)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품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	EQM	-	-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이트(1)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72)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 전기전자제품 이외 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 파랑색-19년도 / 회색-20년도 / 분홍-21년도 추가 사항임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 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제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3).